

##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## 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자의적 해석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고, 도정배심원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부서장의 과도한 재량 축소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조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함  
(안 제3조제3항제2호).

- 도정배심원단 심의 제외대상 중 “도정배심원단의 자문을 받을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”를 “천재지변의 복구, 법정전염병 방제, 대정부 건의·의견제출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”로 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앰.

나. 운영부서장의 과도한 재량 축소

(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6조제1항).

- 도정배심원단 구성 권한을 운영부서의 장에서 도지사로 함(안 제5조제1항).

- 도정배심원단의 운영방법에 있어 운영부서의 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1항).
- 다. 기타 자구 수정(안 제4조, 안 제5조제2항, 안 제6조제3항, 안 제7조)

##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천재지변의 복구, 법정전염병 방제, 대정부 건의 · 의견제출 등 사업시기  
를 일실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

안 제4조의 제목 “(도정예비배심원단 선정 등)”을 “(도정예비배심원 선정)”으  
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시군별 인  
구비례로 시장 · 군수의 추천을 받아 500명 이내의 도정예비배심원을 위촉  
한다.

안 제5조 제1항 중 “운영부서의 장은”을 “도지사는”으로 하고, “도정배심  
원단”을 “사안별로 도정배심원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정배심원  
단”을 “도정배심원단의 구성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집합심의”를 “출석심의”로 하고, “운영부서의 장이 사안에  
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.”를 “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.”로  
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견”은 “의견결정”으로 하고, “결정함을 원칙으로  
한다.”는 “결정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당해 업무관련 위원회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”를 “이를 최대한 정책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<b>제3조(도정배심원단의 심의 대상)</b></p> <p>③ (생략)            1. (생략)            2. 도정배심원단의 자문을 받을 경우  <u>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</u>            3~5. (생략)</p>	<p><b>제3조(도정배심원단의 심의 대상)</b>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            1. (원안과 같음)            2. 천재지변의 복구, 법정전염병 방제, 대정부 건의·의견 제출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)            3~5. (원안과 같음)</p>
<p><b>제4조(도정예비배심원단 선정 등)</b></p> <p>① 도정예비배심원단은 충청북도에 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500여명 규모로 위촉하되, 시군별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.</p>	<p><b>제4조(도정예비배심원 선정)</b></p> <p>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500명 이내의 도정예비배심원을 위촉한다.</p>
<p><b>제5조(사안별 도정배심원단 구성)</b></p> <p>① 운영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.....            .....  <u>도정배심원단을</u> .....            ② 도정배심원단은 사안의 경증 등을 .....            .....</p>	<p><b>제5조(사안별 도정배심원단 구성)</b></p> <p>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.....            .....  <u>사안별로 도정배심원단을</u> .....            ② 도정배심원단의 구성은 사안의 경증 등을.....</p>

원 안	수 정 안
<p><b>제6조(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)</b> ① 도정 배심원단 운영은 <u>집합심의</u>를 원칙으로 하되, <u>운영부서의 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도정배심원단 의견은 ..... .....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	<p><b>제6조(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)</b> ① 도정 배심원단 운영은 <u>출석심의</u>를 원칙으로 하되, <u>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도정배심원단의 의견결정은 ..... ..... 정한다.</u></p>
<p><b>제7조(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)</b></p> <p>① <u>운영부서의 장은 .....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에게 ..... .....</u></p> <p>② <u>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..... .....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b>제7조(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)</b></p> <p>① <u>운영부서의 장은 ..... 당해 업무관련 위원회 및 최종 정책 결정권자에게 ..... .....</u></p> <p>② <u>당해 업무관련 위원회 및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..... ..... 이를 최대한 정책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